



국제인증수유상담가(IBCLC)
전문직 행위 규약에 따른 징계
절차

I. 서론

IBCLC 위원회는 국제인증수유상담가®(IBCLC®) 자격을 취득하거나 재인증하려는 개인들을 평가하기 위한 인증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IBCLC 위원회는 IBLCCE 이사회의 권한을 부여받으며 국제 인증 수유 컨설턴트 또는 IBCLC 인증과 관련된 필수 인증 정책 및 활동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갖는다. 필수 인증 정책 및 활동에는 IBCLC 윤리 및 징계 문제가 포함된다.

- a) IBCLC로서의 자격 인증을 받은 자(또한 이하 “인증자”로도 언급)는 일정한 교육과 임상 요건 충족 및 전문 인증 시험 합격을 포함하는 필수 인증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으며 전문직 행위 규약의 적용을 받는다.
- b) 합격한 응시자는 IBCLC로서 자격증을 받으며 대중에게 자신을 그러한 자로서 나타낼 수 있다. IBCLC 인증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 등이 인증자들의 행위에 관해 고소할 수 있도록 본 절차를 도입했다. 위원회는 교육 이수, 특정한 행위의 재발 방지에 대한 각서를 요구하고, 전문직 행위 규약 위반에 대하여 인증자에게 개인적인 견책, 공개적인 징계, 혹은 자격 정지나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c) IBCLC 위원회는 소비자와 대중이 고소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적절한 장소에서 입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본 절차는 IBCLC에 대해 접수된 모든 고소나 질의에 적용된다
- d) 비록 적절한 상황에서는 인증자의 행위에 대해 적합한 정부 기관, 면허 교부 기관 또는 기타 조직에 의뢰할 수는 있으나, 본 절차 하에서 취한 조치가 법률의 집행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고소를 한 개인은, 취해진 모든 공개적 조치에 대한 통지는 받게 되지만, 본 절차로 어떠한 구제나 피해를 받지 않는다.
- e) 징계 절차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한, 고소인(고소인의 자녀 포함), 인증자 또는 제삼자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제출

자료의 모든 정보는 위원회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IBCLC 위원회가 해당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 정보에는 IBLCE의 개인 정보 보호 고지 [https://iblce.org/wp-content/uploads/2020/07/2020_July_Privacy-Notice_FINAL_KOREAN-1.pdf]와 이에 명시된 개인의 권리와 의무 조항이 적용된다.

II. IBCLC 위원회의 윤리 징계 위원회

IBCLC 위원회는 집행 그리고 본 절차의 이행을 책임지고 있다. 위원회는 상설 윤리 징계 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 의장은 위원회를 임명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윤리 징계 위원회 의장 및 위원은 재직 중인 위원회 위원의 다수결로 임명한다. IBCLC 위원회 의장은 본 절차의 시행과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IBCLC 위원회 의장은 본 절차에서 의뢰되는 어떠한 심리(審理) 소위원회, 윤리징계 패널 또는 항소 위원회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본 절차 하에서의 모든 소장에 대한 조사 또는 결정에 종사한 모든 윤리 징계 위원회의 위원, IBCLC 위원회 위원, 직원 및 기타 개인은 법률에 규정된 범위까지 IBCLC 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 IBLCE에 의해 면책 보증과 변호를 받는다.

III. 소장

- a) 소장은 서명이 있어야 하고, 제출자의 유효한 연락처가 있어야 하며, IBLCE 포털에 업로드하거나, IBCLC Commission, 3120 Fairview Park Drive, Suite 720, Falls Church, Virginia, 22042, USA 주소로 “Personal and Confidential”이라고 표시하여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소장 이외의 질의 또는 진술은 IBCLC 위원회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심리하고 처리한다. 징계 절차 과정 중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고소인의 신원은 피고소인인 인증자에게 알려질 수 있다.
- b) 본 절차는 전문인 행동강령(이하 “강령”)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 IBCLC의 잠재적,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불만 사항만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절차는 IBCLC의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비방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같은 상업적 또는 개인적 성격의 분쟁이나 전문적 견해의 차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안은 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결되어야 한다. 본 절차에 따라 IBCLC 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요 내용이 본 강령상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불만 사항에 한한다.
- c) IBCLC 위원회는 공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에 기반하여 자체적으로 고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학대 또는 신체적 위해 또는 기타 심각한 행위와 같이 위중한 행위와 관련한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익명의 소장은 IBCLC 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 d) 소장을 제출하는 개인을 고소인이라고 하며, 이러한 개인은 [국제수유상담가가 전문인 행동강령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직접적인 경위를 통해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충분한 증거 서류가 없거나 간접 증언에 기반한 소장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 고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증거 서류를 소장 서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e) 소장을 제출하는 개인은, IBCLC 위원회가, 소장에 포함된 모든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의 요약, 인증자를 상대로 개시된 징계 절차를 목적으로 (a) 인증자 및 (b) 소장의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공유하거나 이들에게 공개하도록 허용하는 동의서를 서명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f) 소장을 제출하는 개인은 IBCLC 위원회가 본인 및 자녀에 대한 건강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인증자 또는 인증자가 소장에 대한 관련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힌 제삼자로부터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서명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g) 인증자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된 소장은 해당 범죄가 수유 상담 관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할 수 없다.
- h) 전문직 행위 규약에 의거한 비윤리적 행위의 수준과 관련 없는 인증자의 소장이나 보복과 같은 악의적인 의도로 제출된 소장은 절차의 남용이자 전문직 행위 규약 6.1절에 명시된 원칙 "의료 전문가로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에 대한 잠재적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 i) IBCLC 인증 프로그램 또는 전문직 행위 규약과 관련된 진술을 접수하고 예비 심리를 한 뒤, 윤리 징계 위원회 직원 연락 담당자(이하 직원 연락 담당자)는 진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정할 수 있다: (1) 불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2) 직원 연락 담당자는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 소장을 윤리 징계 심리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직원 연락 담당자는 고소인에게 회신하고 고소인이 소장을 수정하여 필요한 증빙 정보 추가 등의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직원 연락 담당자가 실시하는 이러한 모든 준비 절차는 윤리 징계 위원회에 보고한다.
- j) 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소장은 직원 연락 담당자가 윤리 징계 심리 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경우, 윤리 징계 심리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장이 IBCLC에 회부되어 전문인 행동 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할 만한 타당하고 조치 가능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가 확인된 경우 윤리 징계 심리 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자(고소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해당 제보를 종결한다. 윤리 징계 심리 위원회 위원장이 내린 이러한 모든 예비 처분 사항은 윤리

징계 심리 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된다. 윤리 징계 심리 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위원장을 대행할 윤리 징계 심리 위원회의 다른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제1부위원장 또는 기타 임원이 그러한 임명을 수행해야 한다.

만약 진술이 윤리 징계 심리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유효하고 기소 가능한 소장이라고 여겨지면, 윤리 징계 심리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은 문제 행위를 한 인증자에게 서면 통지가 되도록 조치한다.

통지서에는 본 절차 사본, 증빙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 소장의 사본이 포함되어 있고, 인증자가 통지를 받은 후 삼십(30) 일 이내에 소장과 관련하여 인증자가 심리 소위원회에 제시하기 원하는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소장이 IBCLC 위원회에 의해 심리 중임을 통지받아야 한다.

IV. 소장의 심리

a) 전문직 행위 규약 위반 혐의가 포함된 각각의 진술에 대하여 윤리 징계 심리 소위원회는 제출자가 제공한 정보를 명확히 하고, 확충하며, 확증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특정 사실 또는 정황의 조사를 승인한다.위원장의 허가 하에 3명의 윤리 징계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리 소위원회는 각각의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고 적절한 결정을 하도록 한다. 심리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결정한 대로 1건 이상의 그러한 소장을 심리할 수 있으며, 1건의 소장 심리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윤리 징계 위원장 심리 소위원회에 위원이 아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연루나 이해 충돌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심리 소위원회에 소속되지 못한다. 심리 소위원회는 기타 관련 정부 기관 또는 행정 기관 또는 단체에서 사건의 심리를 종결할 때까지 해당 소장의 심리를 연기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심리 소위원회는 조사 활동에 있어서 직원 연락 담당자나 법률 자문에 의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장을 제출한 사람, 그리고 조사의 대상이 되는 인증자, 혹은 인증자의 고용주 또는 지명된 증인 모두 소장에 대한 추가 정보를 위해 연락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추가 정보 제공의 시기는 심리 소위원회에서 규정한다. 심리 소위원회, 혹은 심리 소위원회를 대신하는 직원 연락 담당자는 그 재량에 따라 소장과 관계 있는 사실과 정황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다

b) 심리 소위원회, 윤리 징계 패널 및 항소 위원회의 모든 조사와 심의는, 밀봉되고

“Personal and Confidential”이라고 표시된 문서로 의사소통함으로써 비밀리에 수행되고, 어떠한 예단도 시사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진행된다. 관련이 있거나 잠재적인 관련성이 있는, 소장의 어떠한 측면으로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IBCLC 위원회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이 없으면 고소인 또는 조사 당사자인 인증자 모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어떤 정보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 c) 심리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 받게 된다.

V. 위반 결정: 심리 소위원회 및 패널

- a) 조사 완료 후, 전문직 행위 규약 위반이 있었다고 윤리 징계 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리 소위원회가 권고한다. 윤리 징계 위원회가 위반 판결을 내릴 것을 심리 소위원회가 권고할 때, 심리 소위원회는 적절한 제재의 부과 또한 권고한다. 만약 심리 소위원회가 그렇게 권고하면, 제재와 함께 제안된 결정은 심리 소위원회에 의해 작성되며 윤리 징계 위원회에 심리 소위원회의 조사 기록과 함께 제출된다. 만약 심리 소위원회가, 위반이 있었다는 결정에 반하는 권고를 하면, 소장은 기각되고 인증자와 소장을 제출한 개인에게 소위원회에서 소장을 기각했으며 징계 심사 절차가 종결되었음이 통보된다.
- b) 소장이 기각되지 않는 한, 심리 소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이 윤리 징계 패널에 제공되는 시점에 인증자는 그러한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통보받는다.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통보받는 인증자에게는 심리 소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응답하기 위한 삼십(30) 일의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 c) 심리 소위원회의 일원이 아닌, 윤리 징계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이하 윤리 징계 패널을 구성하며, 해당 윤리 징계 패널은 조사 기록에 입각하여 심리 소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해야 한다. 윤리 징계 위원장은 윤리 징계 위원 패널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참여하고, 모든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수행을 이유로 그러한 참여 자격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어떠한 개인적인 연루나 이해 충돌이 있는 사람은 윤리 징계 패널이 될 수 없다. 패널은 어떠한 관련 정보도 검토하며, 결정을 위해 대면 또는 가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윤리 징계 패널에 제공되는 심리 소위원회 기록은 인증자가 심리 소위원회에 제공한 문서, 심리 소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데 이용한 모든 사실관계 문서 또는 정보, 심리 소위원회의 공식 논평, 조사 결과 및 게시된 권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d) 공식적인 청문회나 재판 형식의 절차는 없고, 공청회나 증인도 없으며, 증거 법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패널은 전적인 재량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행동을 한

인증자에게 전화 회담을 통한 비공식 구두 진술을 허용할 수 있다. 법률 고문은, 항소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윤리 징계 패널에 의해 승인 받는 경우 외에는 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IBCLC 위원회와 윤리 징계 패널은 법률 고문에게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e) 징계 패널은 위반 여부 결정이나 권고된 제재에 관한 심리 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락, 거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윤리 징계 패널은 판결 문서를 행동이 문제가 된 인증자에게 제공하며 패널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전문직 행위 규약 중 어느 조항이 위반되었는지를 확인시킨다. 인증자는 또한 이러한 절차에 의거한 본인의 항소권을 서면으로 통지받으며, **항소 절차에서는 징계 패널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징계 패널의 결정 시점까지의 사실과 상황만을 고려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패널은 또한 판결 문서 사본을 IBCLC 위원회 의장, 또는 의사장이 개인적으로 연루되어 있거나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부의장 또는 다른 임원에게, 그리고 윤리 징계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공한다.
- f) 특정 상황에서, 윤리 징계 패널은, 전문직 행위 규약을 위반한 인증자에게 문제가 된 행위가 종결되었으며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심리 소위원회의 권고를 숙고할 수 있다. 그러한 권고를 내린 심리 소위원회의 결정, 그리고 그것을 수락하는 윤리 징계 패널의 결정은 각자의 재량권 내에 있다.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문제의 인증자는 요구되는 각서를 기회 수령 삼십(30)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각서는 윤리 징계 패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VI. 제재

- a) 인증자의 행위 개선 및 타 회원의 유사 행위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적용된 제재가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에 합리적으로 부합해야 하지만, 다음 중 어떠한 제재든 윤리 징계 패널에 의해 전문직 행위 규약을 위반했다고 결정된 인증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 1) 관련 문제에 대한 지속 교육.
 - 2) 인증자에 대한 개인적인, 혹은 공개적인 견책 문서,
 - 3) 지정된 기간 동안의 인증자의 자격 정지, 또는
 - 4) 인증자의 자격 인증 취소

위의 제재와 더불어, 윤리 징계 패널은 인증자가 특정한 조치를 취하도록(예: 윤리 관련 지속 교육 또는 문제가 된 행위가 종결되었으며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서 제출)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자격 인증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적인 제재 각각에 대해, IBCLC 위원회는 판정 및 제재 내용의 요약을 패널이 결정한 매체를 통해 공표하며, 취해진 조치에 대해 소장 제출자에게 통지한다. 본 절차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어떠한 제재와 공표도 항소 기간이 만료되거나 항소가 결정될 때까지는 제정되거나 실행되지 않는다. 인증 자격이 취소된 인증자는 향후 IBCLC 자격 인증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인증 자격이 취소되면, IBCLC 위원회가 요청하는 모든 자격증 및 기타 자료는 즉시 IBCLC 위원회에 반환되어야 한다.

VII. 항소

- a) 인증자가 전문직 행위 규약을 위반했다는 윤리 징계 패널의 판정 통지를 수령하고 삼십(30)일 내에, 판정 받은 인증자는 IBCLC 위원회 의장에게 항소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아래의 b)에 부합하는 항소의 근거를 확인시킬 수 있다.
- b) 의장에게 보내는 우편의 주소는 Chair, IBCLC Commission, 3120 Fairview Park Drive, Suite 720, Falls Church, Virginia, 22042, USA이며, “Personal and Confidential”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항소 신청 접수 후, 위원회 의장이, 혹은 부의장이 어떠한 개인적 연루나 이해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 선출자 또는 기타 임원이 세 사람의 IBCLC로 구성된 항소 기구를 조직하며, 이들은 윤리 징계 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야 한다. 어떠한 개인적인 연루나 이해 충돌이 있는 사람은 항소 위원회에 속할 수 없다. 항소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 받게 된다.
- c) 항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윤리 징계 패널의 전문직 행위 규약 위반 판정이 부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한다: (1) 사실에 대한 자료 오류, 또는 (2) 공표된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심리 소위원회 또는 윤리 징계 위원회의 미준수. **윤리 징계 패널의 판정 시점까지 윤리 징계 패널에 알려진 사실들에 의해 재현된 사실과 상황만이 항소 중 숙고된다.** 항소는 청문회나 어떠한 유사 재판 형식의 절차는 포함되지 않으나, 항소 위원회는 전적인 재량으로 전화 회담을 통해 항소인의 비공식 구두 진술을 허용할 수 있다. 항소 서면 진술과 어떠한 답변 진술도 인증자, 그리고 윤리 징계 패널의 위임을 받은 공인 대리인들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진술은 항소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정한 어떠한 일정이든, 그에 따라서 작성된다. 인증자의 법률 고문은, 항소인에 의해 요청 받고 항소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항소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다. IBCLC 위원회와 항소 위원회는 언제든지 법률 고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d) 위원회는 항소 신청 접수 후 구십(90)일 내에 항소를 진행하고 완료한다. 항소 위원회의 결정은 윤리 징계 패널의 판정과 제재를 확인하거나, 변경하거나 기각한다. 판정 사유서를 포함한, 항소 위원회의 판정은 이사회 의장에게, 혹은 의장이 어떠한 개인적 연루나 이해 충돌이 있을 때는 부의장이나 기타 임원에게,

그리고 윤리 징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된다. 항소 위원회의 판정은 IBCLC 위원회, 판정 대상자인 인증자, 그리고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VIII. 사임

만약 소장의 대상자인 인증자가 본 절차 하에서 소송 계류 중인 어느 시점에서도 자신의 IBCLC 인증 자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면, 심리 소위원회, 윤리 징계 패널, 혹은 항소 후 조직된 항소 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치 없이 소장은 기각된다. 모든 기록은 봉인되고 그 개인은 IBCLC 위원회 자격 인증에 재응시할 수 없다. 그러나 IBCLC 위원회는 윤리 징계 위원회에 사임 사실과 날짜, 사임 당시 계류 상태인 소장의 실상과 일반적인 특성을, 법률 행정에 관여하는 정부 기구의 요청에 따라 전달할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임이 발생한 경우, 소장을 제출한 사람이나 단체는 사임 사실과 날짜, 그리고 IBCLC 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소장을 기각했음을 통지 받는다.